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9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성일중 · 강대식
고동진 · 권영세 · 서명옥
권영진 · 김기웅 · 김태규
이종배 · 김승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제품 지원시책의 수립,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·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,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).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추진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내용,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3(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능형 로봇실증센터(이하 “실증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·성능검증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의 구축·운영
2.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의 실시
3.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·성능검증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
4.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·성능검증 지원을 위하여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

⑤ 실증센터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장에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의 추진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내용,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실증 시험 및 성능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(이하 “실증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·성</u>

능검증에 필요한 시설·장비
등의 구축·운영

2.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
성능검증의 실시

3.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·성
능검증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
협력

4.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실증
시험·성능검증 지원을 위하
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운영
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지정된 실증센터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
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
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
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
업무실적이 없는 경우

<u><신 설></u>	⑤ <u>실증센터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46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